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2022. 2. 10.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발의자: 김인호 의원 외 9명(김인호,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 발의일자: 2022. 1. 26.
- 회부일자: 2022. 1. 27.
- 검토기간: 2022. 1. 28. ~ 2. 4.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 발안, 사무직원의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추가(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신설)

4. 참고사항

- 개정규칙안: 불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7조 ~ 제52조, 제102조 ~ 제104조 및 부칙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행정안전부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표준안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 26. ~ 2022. 2. 7.)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가 신설되어 사무국장과 정책지원관의 세부 사무분장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한 사항임.
- 규칙안 제2조의 사무국장 분장사무임.
 - 안 제14호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달서구민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 안 제15호 및 제16호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설업무를 규정하였음.

- 규칙안 제4조의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 그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규칙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4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 ----- -----.
제2조(사무국장) ① (생 략)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2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u><신 설></u>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17. 그 밖에 -----
제3조(전문위원) ① (생 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 략)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칙】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 ·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 도의 의회사무처,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 · 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④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 · 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 · 군 · 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표준안】

주요내용	현행조문	개정조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	< 신설 >	<p>제○조(정책지원관) ① [사무처(국·과)/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p> <p>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p>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 대구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소속위원에 대한 위원회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